

CASES

명예훼손 사례

부적절한 제목을 사용해 독자의 이목을 끈 기사, 반론보도 게재

A신문은 지적장애인 폭행과 경영진의 보조금 횡령 및 배임으로 문제가 된 신청인 기관이 행정 당국의 폐쇄 조치에 저항하고, 행정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어 2015년에도 신청인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조정대상기사는 ‘도가니’라는 표현이 포함된 제목과 함께 보도됐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행정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한 것이지 시간을 끌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도가니’ 사건은 아동 성적 학대와 관련 있는 사건으로서 신청인 기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언론사가 사실 관계를 오해할 만한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뇌물수수 등 의혹 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로 직권조정결정

지역 모 주간지는 지역 농협 조합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났고 경찰이 농협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지인인 군수로부터 골프채를 빌려서 사용하고 이를 돌려줬으며, 농협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뇌물수수 부분은 반론보도, 압수수색은 정정보도를 권고했으나 언론사가 이를 거부하여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후 언론사가 결정을 수용, 다음 호에 보도가 게재됐다.

고소사건 보도에 대해 반론 및 추후보도 권유, 반론 등으로 조정성립

A 지면 및 인터넷신문은 모 시청 공무원 노조의 인사논평을 인용하여 당시 감사관인 신청인이 시 산하공단 직원의 개인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중재부는 시 공무원 노조의 인사논평만을 인용하여 보도해 신청인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반론보도하고, 신청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후보도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고 피신청인도 일부 과도한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여 신청인의 사과문 게재 요구를 수용했다. 양측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후 반론보도 및 사과문이 게재됐다.

초상권침해 사례

무단 초상 사용에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

D방송사는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하였으며, 신청인이 세탁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지사나 본사에 책임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D방송사가 신청인의 초상을 몰래 촬영하여 사용한 것이고, 세탁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 결과 D방송사 ‘다시보기’ 코너에서 조정대상방송을 삭제하는 한편, 초상권 침해가 인정돼 신청인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